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731-6787 ~ 9 / 전송 731-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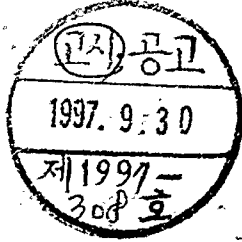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기58506-173

시행일자 1997. 9.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서울특별시
보존		홍기
부시장	전결	
주택국장	우	법무담당관 김사필
주택기획과장	우	
주택관리계장	우	
기안	이동일	



제목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1. 주기58506-586호('97.4.8)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번호로 공람공고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검토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의 규정에 의거 동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자 합니다.

○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내용

위치	토지이용 계획	면적(m ²)		비고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초구 잠원동 (영동아파트 1-4지구)	주택용지	449,844	449,182	662.0m ² 감소	기존동사무소 이전부지 확보
	주구중심	19,166	19,828	662.0m ² 증가	
서초구 잠원동 (영동아파트 1-5지구)	아파트지구 일부해제	5,453,844.5	5,453,078.5	766.0m ² 감소	한남대교확장계획에 따른 47호 광장확장에 필요한 도시계획 용도지구변경

따로 붙임 1.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검토

2. 고시(안) 및 변경도서 각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제요청

1.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고시(안) 2부. 끝.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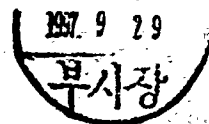
제목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통보

1. 주기58506-586호('97.4.8)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번호로 공람공고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고시(안) 1부.

2.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청

수신처 : 서초구(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고 시 (안)

고시번호	1997. 9. 18 제 218호
담당자	법제심사제정법무담당관
	김민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8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1-388호('91.12.30)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00호('97.6.11)로 아파트지구 변경결정고시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발기본계획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와 서초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가. 개발기본계획의 명칭 :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나. 개발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일대(1,888,254m²)

다. 개발기본계획의 변경내용

- (1) 영동아파트1지구(반포지구)내 제4주구의 주택용지 662m²를 주구중심으로 변경함
- (2) 영동아파트1지구(반포지구)내 제5주구의 주택용지 766m²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함
- (3) 개발기본계획의 변경개요
(가) 지구면적표

부시장

(단위 : m²)

구 분	계	1-1 주구	1-2 주구	1-3 주구	1-4 주구	1-5 주구
변 경 전	1,889,020	355,585	189,624	427,446	624,345	292,020
변 경 후	1,888,254	355,585	189,624	427,446	624,345	291,254
비 고	766 (감)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766 (감)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m ²	%	m ²	%	
계	1,889,020	100	1,888,254	100	766㎡ 감소
지구 중심	51,866	2.8	51,866	2.75	변경 없음
주구 중심	57,789	3.0	58,451	3.10	662㎡ 증가
분구 중심	22,148	1.2	22,148	1.17	변경 없음
주택용지	1,287,699	68.1	1,286,271	68.12	1,428㎡ 감소
학교용지	174,033	9.2	174,033	9.21	변경 없음
공원용지	150,637	8.0	150,637	7.98	변경 없음
도로용지	144,848	7.7	144,848	7.67	변경 없음

(다) 1-4주구 면적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m ²	%	m ²	%	
주구면적	624,345	100	624,345	100	변경 없음
주구 중심	19,166	3.0	19,828	3.18	662㎡ 증가
분구 중심	7,838	1.3	7,838	1.26	변경 없음
주택용지	449,844	72.0	449,182	71.94	662㎡ 감소
학교용지	47,960	7.7	47,960	7.68	변경 없음
공원용지	44,780	7.2	44,780	7.17	변경 없음
도로용지	54,757	8.8	54,757	8.77	변경 없음

(라) 1 - 5 주구 면적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m ²	%	m ²	%	
주구면적	292,020	100	291,254	100	766㎡ 감소
주구 중심	15,889	5.4	15,889	5.45	변경 없음
분구 중심	4,241	1.5	4,241	1.45	변경 없음
주택용지	188,067	64.4	187,301	64.31	766㎡ 감소
학교용지	23,407	8.0	23,407	8.04	변경 없음
공원용지	53,230	18.2	53,230	18.28	변경 없음
도로용지	7,186	2.5	7,186	2.47	변경 없음

(마) 변경 전·후 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와 서초구 주택과에 비치된 개발기본계획관련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8299 / 전송 3707-8299
 처리부서 : 도시개발과 (시청별관 2동1층) 담당 조남성 계장 신규상 과장 허영

문서번호 도개58551-1345

시행일자 97.09. 30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도시개발과장	전 결		
도심개발2계장		협조통제관 법무담당관실 (고시안심사) 도심개발계장	
기안	조 남 성		

제목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1. 건설부 고시 제345호('79.9.21)로 구역지정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24호('97.4.26)로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기 결정된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 관보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축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역명	지구명	내용	비고
마포로1구역	제4지구	건축시설의 높이 변경 203M → 198.2M 이하	건축시설의 높이 4.8M 감소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2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도시관리과장

제목 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 보고(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 제4지구에 대해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붙임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3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종별 : 고시문

나. 게재건명 :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결정 고시

다. 게재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붙임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4안)

수신 : 마포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결정 통보(경미한 변경)

1. 마포구 도정58422 - 637('97.9.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번호로 변경 신청한 마포로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음을 통보하니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085

대조필



고 시 (안)

24	시시	1997.9.30	제 3/2호
담당자	도시재개발법	담당	담당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 309 호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결정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24호('97.4.26)로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마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칭 :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도심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마포구 도화동 46-1번지의 17필지, 12,478.4㎡
- 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마포구 도화동 46-2번지 외 8필지 : 2,951.8㎡
- 라.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주용도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비고
마포로1구역 제4지구	기정	9,526.60	50	950	156,411.7	숙박시설	52/8	203.0	건축시설의 높이 4.8M감소
			55	990	160,222.0				
	변경	9,526.60	50	950	156,411.7	숙박시설	52/8	198.2 이하	
			55	990	160,222.0				